

속초시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4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7. 11. .

제 출 자 : 속초시장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문개정 (‘07. 5. 11, 법률 제8423호)에 따른 관련, 조문을 정비하여 속초시체육진흥기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근거법령 조문 변경(안 제1조)

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 →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비예산

다. 기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2) 입법예고 :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

속초시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속초시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속초시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,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